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2025, 10,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25-112

나. 제 안 자: 차해영 의원 외 7인

다. 제안일자: 2025년 10월 13일(월)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10월 14일(화)

2. 제안사유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 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마.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28조
- (2)「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경제진흥과(경제총괄팀)와 합의되었음
- 라. 입법예고 : 2025. 9. 23. ~ 9. 29.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가. 제정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

- 본 조례 제정안은 2025년 10월 13일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로컬크리에이터'는 '로컬(지역)'과 '크리에이터(창작자)'의 합성어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지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의미함.
- 최근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창업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기반 소비문화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약 93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마포구는 <u>홍대·연남동·망원시장·경의선숲길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u> <u>창의산업 인프라를 보유</u>하고 있어, <u>로컬 창작과 콘텐츠 산업의 결합을</u> 통해 지역 가치 제고 및 도시브랜드 강화가 기대됨.
- 그러나 현재 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산발 추진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 이 미흡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조례 제정은 <u>지역 자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을 제도 적으로 지원함</u>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입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참고로 경기도, 경상북도, 서대문구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조 례를 시행 중임.

나.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체계〉

조 항	조 제목	조 항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 사업
제2조	정의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7조	위탁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	협력체계 구축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의 자연환경·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동일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청장이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방향·목표·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아이디어 인프라 확충, 판로 개척, 교육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함.
-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 터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 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정부·서울특별시·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창의적 자원을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높음.
- 특히 문화·예술·관광자원과 연계된 로컬 브랜드 창업은 마포구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사한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정책과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지역 브랜드 상품, 지역축제 등과 연 계해 로컬 비즈니스의 홍보 및 판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붙임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개요(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목적)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 (지원규모) 개인트랙 210개사 (최대 4천만원) 협업트랙 24개팀 (최대 7천만원)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7대① 지역가치② 로컬푸드③ 지역기반제조④ 지역특화관광유형⑤ 거점브랜드⑥ 디지털문화체험⑦ 자연친화활동
 -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 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 우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최대 3억원 사업화 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 등

□ 로컬크리에이터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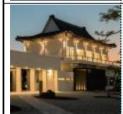
<와이제이컴퍼니>

- · (아이템) 제주의 지역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어묵
- · (내용) 제주산 실꼬리돔 등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어묵으로, 첨가물을 배제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지역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중



<키친파이브>

- · (아이템) 영도의 폐바지선을 활용한 해상정원
- · (내용)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현대인의 치유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 공원 프로젝트. 2025년 오픈 예정인 바지선 해상정원은 180포트의 식물을 활용한 정원 시스템, 지역 스토리를 담은 미식 콘텐츠, 국내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는 가든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



<흑유재>

- · (아이템)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담은 한식 다과와 감각적인 문화 공간
- · (내용) 양평 흑천을 모티브로 지역적 특색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 다과와 쉼의 공간 제공. 매월 지역 특산물로 제작한 '이 달의 양갱'과 지역 특산물을 담은 음료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



<스킴밐스>

- · (아이템) 양양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스킴보드
- · (내용) 양양의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 스킴보드를 제작. 관광객들에게 얕은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역동적인 해양 스포츠를 제공하며, 양양의 지역 활성화와 ESG 가치를 실현



<그리닝>

- · (아이템) 금산 인삼 부산물을 활용한 K-뷰티 화장품
- · (내용) 금산 인삼의 부산물을 재가공해 피부 자극은 줄이고 보습력을 높인 화장품. 지역 농가와 상생하며 금산 인삼의 글로벌 가치를 확장하는 K-뷰티 브랜드



<갱소년>

- · (아이템) 전통 간식 양갱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다과 제품
- · (내용)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전통 간식 양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중심으로 로컬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실현



<제주로부터>

- · (아이템) 제주의 로컬 농산물과 먹거리를 큐레이션한 유통 플랫폼
- · (내용) 제주의 소농과 생산자를 지원하며, 제주의 식문화와 여행 경험을 더한 로컬 먹거리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다품종 소량 생산과 예약 주문 방식을 통해 제주의 고유 농산물 가치를 재발견하며 로컬 생태계를 새롭게 디자인

붙임 2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 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 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 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 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 자문 및 교육
-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 자문 및 교육
-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 인력 · 판매 · 수출 등의 지원
-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